

2024. 10.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대표 발의 : 최승선 의원)

의안 번호	2024-98
----------	---------

제출연월일 : 2024. 10. .

발의 의원 : 최승선 의원

1. 제정이유

○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김제시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불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관련 법령 발췌서
- 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 마. 타 시도 조례 현황
- 바. 타 지자체 조례
- 사. 입법예고 결과
- 아.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자. 성별영향평가 결과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시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사물인터넷(IoT)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일컫는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증진을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시행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

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에 근거한 디지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조례에 명시된 관련 사업의 추진 시 교육강사비, 강의용 장비 구입 전문연수과정 등 교육운영 및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 예산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근거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과정 운영 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에 해당
- 나. 구체적 사업 범위 및 지원 규모 미정에 따른 비용 추산 어려움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범위·내용, 사업규모 확정 후 추계가 가능

4. 작성자 : 평생교육팀 백명숙 팀장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관련 법령 발췌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 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수집·저장·가공·처리·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

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김제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여	부	
전라북도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지자체 경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전북은 전무함.

□ 타 시도 현황

지자체	제정일 및 담당부서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 (23.10.12) 평생교육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 제7조5호 (21.10.29) 교육법무과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문해교육 조례에 ‘디지털’ 추가
경상남도	◦ (22.04.14) 공보관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 (21.05.26) 행정자치국 정보화정책과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 (23.11.03) 미래문화국 스마트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4.05.09) 행정국 평생교육과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경기도 광명시	◦ (23.06.21)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디지털 혁신 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 (23.11.10)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3.03.30) 교육정책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타 지자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3-10-12 조례 제 35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효율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3.03.30 조례 제29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

2.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905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조례안명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30. ~ 2024. 10. 7.(7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자원관

장학윤

정책자원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전경 2024. 10. 7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65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4. 9. 30. ~ 2024. 10. 7.(7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554호(2024.9.30.시행)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학율

정책지원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한길 2024. 10. 7.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657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지정선미 품! 세계를 날다. 제26회 김제지평선 축제 10. 2. (수) ~ 10. 6. (일)



김 제 시



수신 김제시의회 의장

(경유)

제목 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전북김제077)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 의회사무국-4556(2024. 9. 30.) 호와 관련됩니다.
-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물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물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4A전북김제077) 1부. 끝.

김 제 시
의회
의장

주무관 김재은

기록장비담당

기록부서장과 관리 2024. 10. 2.

총 서명인

첨조자

시행 기록부서장-25522

(2024. 10. 2.)

전수 의회사무국-4021

(2024. 10. 4.)

부 :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풍문화 441-1 서원동, 김제시청 (서원동) / <https://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005

팩스번호 063-540-8029

/ kje@w4400rtaa.kr

/ 대국민 공개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뛰는 도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전북김제077							
정책명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장라윤	전화번호	063-540-3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9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p>I. 개요</p> <p><input type="checkbox"/> 개정 목적</p> <p><input type="radio"/>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김제시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p><input type="radio"/>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p> <p><input type="radio"/>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p> <p><input type="radio"/>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p> <p><input type="radio"/>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p> <p><input type="radio"/>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p> <p>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가족복지과)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p> <p>'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p>김제시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은/063-540-6905)</p>								
의회사무국장 귀하								